

대전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3나221241(본소), 2023나221258(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건물명도]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3나221241(본소), 2023나221258(반소)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9. 12 선고 2022가단117702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A(법명 B)

피고(반소원고), 항소인C(법명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변론 종결 2024. 4. 23.

판결 선고 2024. 5. 28.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9. 12. 선고 2022가단117702(본소), 2022가단131777(반소)

판결

주 문

-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8. 6.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재단법인 E에 대한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법원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로부터 1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본소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1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에서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재단법인 E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 C'를 '피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8행의 "이행하지 않았다" 다음에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약정은 입실건당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과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는 계약이 상호 조건적으로 결부된 계약의 연립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이연합의서를 받아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입실건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물 양도계약이 이행될 수 없다는 취지여서, 입실건당이 이 사건 약정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9행의 "회신했다"를 "회신했고, F종교단체의 종법인 승려법의 건당에 관한 규정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인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17행의 "회신했다."를 "회신했고, F종교단체의 종법인 승려법의 건당에 관한 규정에서 건당은 전래의 고규에 의한다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연합의서의 제출이 그 내용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유현정

판사강애란

판사임수정

별지